

한 국 글 로 벌 의 약 산 업 협 회
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(동자동 56 트윈시티 남산 4 층) (우)04323 전화:(02) 456-8553 전송:(02) 456-8320

문서번호: 2026-092

시행일자: 2026 년 07 월 21 일

수신: 대한의사협회, 대한의학회, 대한약사회

제목: 「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」 및 「실무운용지침」 개정 시행 안
내 및 협조 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「공정경쟁규약 개정 권고」(시장감시정책과-6, 2026. 1. 2.)에 따라 「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」 및 「실무운용지침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으며(문서번호 2026-069, 2026. 6. 5.), 2026. 7. 20.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 개정안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 4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같은 날부터 개정 규약 및 실무운용지침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3. 이에 학술대회 개최·운영 및 전시·광고 지원과 관련하여 귀 회 및 귀 회 산하 학회의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개정 실무운용지침 제 15 조 제 8 항에 따라 회원사는 전시·광고 지원과 관련하여 학회 및 요양기관등으로부터 학술대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받아 보관할 의무가 있는바, 귀 회 및 귀 회 산하 학회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.

가. 학회가 회원사에 부스·광고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, 요청 공문에 해당 학술대회의 개최 계획(장소, 시간, 주제 및 예상 참가자 수)과 직전 차수 학술대회의 개최 실적(개최 장소, 시간, 주제, 개최 방식 및 참가자 수)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직전 차수 개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개최 결과 자료(참가자 수, 광고 게재 내역 등)를 학술대회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원 회원사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1. 「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」 개정 신규대조문 1 부.
2. 「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」 개정안 전문 1 부.
3. 「실무운용지침」 개정안 전문 1 부. 끝.

한 국 글 로 벌 의 약 산 업 협 회 장

